

공직기강감찰 주요지적사례

Ⅰ 금품·향응 수수, 예산목적의 사용



- 직무관련자가 식사비 부담

△△시 기초자치단체 건설과장 A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해당부서에서 감독 중인 공사의 현장소장 B를 만나 함석시켰고, 동석한 B가 비용 일체를 지불함
- 사적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경비를 부당 수령

△△군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A는 2010년 8월 공무원외여행 허가(글로벌 너싱 리더십 과정, 스위스 제네바 방문)를 받고도 실제로는 스위스에 가지도 않고, 관광상품을 이용하여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을 사적으로 여행한 뒤, 여행경비 399만 원을 부당수령
- 보조금 지원단체의 여행경비 지원

△△군 직원 A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

Ⅱ 성실의무 위반·품위손상

- 위장전입 등

△△구청 A과장은 2012. 5월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군 소재)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고, 민박업에 종사, 불법 증축 등으로 건축법 위반, 부하 여직원 명의로 차명휴대폰 사용 및 요금(39만원) 전가 등 품위손상
- 음주단속 시 신분을 속임

△△시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0명은 2012. 4 ~ 2013. 1월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 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 회피

Ⅲ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군 A는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아들 결혼식 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 임차

△△시 A씨는 직무관련자인 △△건설 대표가 제공한 빌라(32평형)에 4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임대료(월 50만 원) 등 지급 없이 무상 거주
- 이해관계 직무회피 미신고

△△시 A는 2010. 8월 ~ 2012. 10월 기간 중, 처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변경인가 등의 업무(6건)를 처리하면서 직근 상급자 등에게 이해관계인임을 밝히지 않고 업무 수행

Ⅳ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다단계 판매원 등록 후 영리 행위

△△시 직원 A는 2013. 1월 ◇◇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년간 화장품 등의 물품판매, 하위 직급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182만원의 급여를 받음

Ⅴ 기타 위반사항

- 개인정보 무단 조회

△△군 A는 예전에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 박모 씨가 아직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박모 씨의 개인정보를 열람
- 공용물 사적 사용

△△시 직원 A는 관용 트럭을 자녀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고, 관급 유류 60리터를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온풍기와 본인 차량에 주유
- 안전관리 업무 소홀

△△시 예서는 2010. 4월 준공된 ◇◇기념관의 시공업체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3. 8. 22일 건물 치장 외벽면(21m×6m) 붕괴
- 출장 중 사적 용무

△△구 직원 A는 허위출장을 득하고 배우자를 만나 1시간 30분 가량 백화점 쇼핑